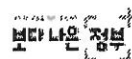
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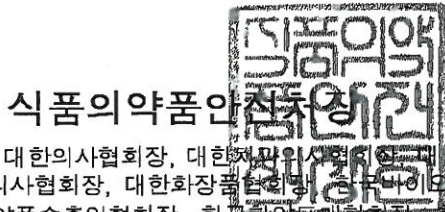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2018.10.25.자)

1. 의약품 제조업자 외의 자가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약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은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의약품의 첨부 문서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이 2018.10.25.(목)자로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동 공포안은 2018.10.25.자 (전자)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끝.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화학약품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한약사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, 대한화장품협회장, 대한바이오의약품협회장, 한국병원약사회장,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한약도매협회장, 한국한약산업협회장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사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

주무관 이동원 장 김상봉
의약품정책과 전결 2018.10.25.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정책과-9194 (2018. 10. 25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21 팩스번호 043-719-2606 / ldw0925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